

# 서울시 아동·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

---

책임연구원 : 권 일 남

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

# 목 차

---

I. 연구의 필요성

II. 연구의 내용 및 결과

III. 연구의 결과를 통한 방향

# 1. 연구의 목적 및 방향

---

1단계  
개념 정립

[과업1]  
아동·청소년 문화활동의  
정책적 개념과 범주 정의

2단계  
기초 분석

[과업2]  
서울시  
아동·청소년의  
문화활동 현황 분석  
:참여 실태, 문제점

[과업3]  
서울시의  
아동·청소년문화활동  
지원 현황 분석  
:정책체계 및 특징

[과업4]  
지역간  
비교 사례 연구  
:시도별 조례/사례,  
해외 사례

3단계  
정책 제안

[과업5]  
제도화를 위한 추진전략 제안  
:조례 및 정책연계 방안

## 1) 과업1: 아동-청소년 문화활동의 정책적 개념과 범주 정의

### ■ 주요내용

- 아동-청소년의 범주에 대한 정리와 서울시 정책 대상의 정의
- 문화활동 및 문화자원의 개념적 의미와 분류 체계의 설정
-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정의가 필요한 항목의 선정과 개념화 논의

### ■ 연구방법

- 청소년 연령 관련 법률과 연구보고서 등 문헌자료 분석
- 문화자원 분류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(해당분야 기관의 자료조사)
- 정책/문화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개념 설정 방안의 타당성 검토

## 2) 과업2: 기초분석1 - 서울시 아동-청소년의 문화활동 현황 분석

### ■ 주요내용

- 아동-청소년 대상 : 아동-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
- 전문가 대상 : 문화활동 관련 문제점 분석(현실, 원인, 대안 등)
-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분석(제도적 접근 방안 중심)

### ■ 연구방법

- 아동,청소년 대상의 기존 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메타 분석을 실시함
- (협의사항) 자체적인 설문조사 실시 - 1,000명 기준
- 개별적인 전문가 면담조사 및 집중토론 방식의 자문회의 실시

### 3) 과업3: 기초분석2 - 서울시의 아동-청소년문화활동 지원 현황 분석

#### ■ 주요내용

- 서울시 아동-청소년 정책체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현황 분석
- 서울시 관련 분야 조례 및 규칙의 현황과 주요내용 분석
- 서울시 아동-청소년 문화자원의 영역별 현황 및 주요 특징 분석

#### ■ 연구방법

- 서울시 시정계획 및 연간보고자료, 관련 조례 등 문헌자료 집중 분석
- 서울시 관련 정책 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 및 FGI분석 활용

### 4) 과업4: 기초분석3 - 지역간 비교 사례 연구

#### ■ 주요내용

- 시도 조례 비교 : 아동-청소년 관련 시도의 조례를 비교 분석
- 외국 도시 비교 : 참고가 될 도시(핀란드참고)
- 비교사례 연구의 종합 검토를 통한 시사점 분석

#### ■ 연구방법

- 시도(필요시 주요 시)별 관련 조례를 검색-수집하여 특징과 내용을 분석

## 5) 과업5: 제도화를 위한 추진전략 제안

### ■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을 통한 법률적 근거 확보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서울시 정책 반영-연계를 위한 전략 제안
- 조례에 포함될 제반 규정의 영역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
- (가칭) 서울시 아동·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(안) 제안

## II. 연구의 내용 및 결과

---



## 1. 아동청소년문화활동의 개념화 필요성

- 1) 문화개념의 확산성과 대상별 연계부재
- 2) 개념정의 대상고려 : 정책적, 대상, 연령 , 내용측면
- 3) 문화개념의 법적 연계성 : 문화예술진흥법, 청소년활동진흥법 등
- 4) 문화활동 추진 조직의 체계성

## 2. 핀란드의 아동청소년문화정책방향

- 핀란드는 지역마다 문화적 특징이 강한 다문화(다언어) 국가로서 지역마다 제공되는 문화예술 교육 수준이 다양함
- 방과 후 문화, 예술 활동 참여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(7-15세: 99년 9.3만명 → 08년 13.4만명)하고 있으나 중앙정부(문화교육부) 차원에서 균형적인 문화활동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문화예술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정부는 자질과 기술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함
- 문화교육은 청소년들의 자기존중감과 사회활동참여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의식이 강함
-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이 복지시책의 하나로 인식됨

- 문화예술정책의 핵심은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에 초점을 두는 정책 수행
- 문화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교양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이 직업(vocational)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사의 지도하에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
- 문화예술법령에 근거한 재정지원으로 예산(세금)지원이 강하며 재정 지원 외에 개인지원, 기업후원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이 지원되고 있음

### 3. 아동청소년 및 전문가집단이 인식한 문화한계

#### 1)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

주요 쟁점	현실적 문제요인과 내용
(1) 문화활동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호간 관계개선</li> <li>- 학생간의 상호성 증대</li> <li>-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한 학교시설 활용</li> <li>- 문화에 대한 명확성 부재(놀이, 휴식 등 개념 부재와 PC방, 당구장, 노래방 등 문화시설의 개념차 확인)</li> <li>-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에 대한 인식요구로 자신의 공간과 아지트 요망</li> <li>- 시설부재시 소극적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문화공간 찾는 노력이 점증(48.8%)</li> </ul>
(2) 현실적 문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간의 절대적 부족(부가적으로 어느곳에서 이행하는지에 대한 명확성 부재)</li> <li>- 문화활동에 대한 비용부담</li> <li>- 전용공간부재에 대한 아쉬움</li> <li>-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도 정보부재에 대한 아쉬움 토로</li> </ul>

주요 쟁점	현실적 문제요인과 내용
(3) 문화활동장 애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간부족</li> <li>- 장소의 선택성 : ① 청소년수련관 ② 학교 ③ 도서관 ④ 기타 시설은 거의 활용 못함(복지관, 창작소, 문예회관 등)</li> <li>- 아동청소년만의 공간부재</li> <li>- 학교시설이용에 따른 학교간 시설의 격차와 열악성</li> <li>-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명료성 부재</li> <li>- 우리의 활동을 지원할 전문가 선택과 연계 부재</li> <li>- 아동청소년과 눈높이가 맞지 않은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</li> <li>- 비용절감을 실제로 지원하는 정책의 부재(할인 및 면제 등)</li> </ul>
(2) 대안인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업시간의 절대적 축소</li> <li>- 전용시설과 프로그램의 확대</li> <li>- 접근성 높은 시설 확대</li> <li>- 경제적 부담 해소 : 비용절감방안(문화카드확산 등)</li> <li>- 홍보와 정보력 강화</li> </ul>

## 2) 교사의 문화활동 인식

주요 쟁점	현실적 문제요인과 내용
(1) 문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학교나 사회적 분위기의 부정성</li><li>- 교사의 전문성 부재</li><li>- 예산 부족</li><li>- 지역사회기관간 연계 부재</li></ul>
(2) 대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전용시설과 공간</li><li>- 문화인력을 지원하는 인재풀 지원체계 구축</li><li>- 문화지원에 대한 정보센터구축</li><li>- 문화지원 예산 확대</li></ul>

### 3) 전문가의 문화활동 인식

주요 쟁점	현실적 문제요인과 내용
(1) 문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동청소년전용시설에서 지원할 예산의 절대 부족</li> <li>- 학교와 연계를 위한 적극성 부재와 교육청의 확대요망</li> <li>- 청소년전용공간의 부재</li> <li>- 취약한 문화단체의 존재감으로 인한 활동 한계</li> <li>- 지역의 문화자원 확대를 위한 아카이브 부재</li> <li>- 문화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한 교육역량 부재</li> </ul>
(2) 대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거리 및 전용공간 확산</li> <li>- 청소년들이 독자 자신의 존재를 상시표현하는 공간마련</li> <li>- 지역사회 청소년중심 창작소 및 공간 제공</li> <li>- 권역별 아동청소년문화지원 공간 마련 : 관리자 및 전문가 상시거주로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하는 여건 제공</li> <li>- 권역별 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조 형성</li> <li>- 아동청소년정보제공의 통합정보지원체계 구축</li> <li>- 아동청소년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기금 조성</li> <li>- 아동청소년문화활동지원을 위한 학교-교육청 연계 방안 제시</li> <li>- 문화활동 법인 및 단체의 세제지원</li> </ul>

## 4. 아동청소년 및 전문가집단이 인식한 문화한계종합

### 주요 내용

첫째,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에 대한 인식부재를 들 수 있다.

둘째, 입시위주 교육의 한계로 인한 시간부족이 큰 문제였다.

셋째, 동일한 활동을 하더라도 학교간 문화시설 격차상존이 아직도 여전하였다.

넷째, 가장 큰 문제로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문화활동 향유장소의 절대적 부족은 개선되지 않았다.

다섯째, 청소년들이 바라는 문화활동에 대한 정보입수 제약성은 정보화시대 개선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.

여섯째, 장기적, 지속성 활동이 아닌 단기성 활동과 안전성 부재는 아동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. 즉 학교에서만 붙잡아둠으로써 이들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.

일곱째, 아동청소년이 바라는 문화활동 거점정보제공센터의 부재는 문화적 거점을 만들고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자율적이고 자발적 활동을 하게 해 주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.



## 주요 내용

여덟째,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지원을 위한 지도자의 부족은 지역사회에 수많은 기타자원이 있음에도 청소년과 함께 교감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.

아홉째, 권역별 공간선택의 다양화 요구가 제시되고 있다. 아동청소년의 동선이 짧은 관계로 먼 곳보다는 근거리에 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. 열째, 한 구에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터의 부재는 역시 공간적 협소성으로 나타나고 있다.

열한번째,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이다. 사실 지역에 공공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시간과 눈높이가 다른 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.

열둘째, 아동청소년의 문화체험활동의 안전성 확보부재는 소극적 활동으로 꺼리게 만드는 점이다. 아동청소년의 활동은 그 자체가 야외나 밖을 전제로 하므로 공공적 관점에서 차량서비스, 보험서비스 등 교사, 지도자, 학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무관심은 불안감을 촉발시킨다.

### III. 연구의 결과를 통한 방향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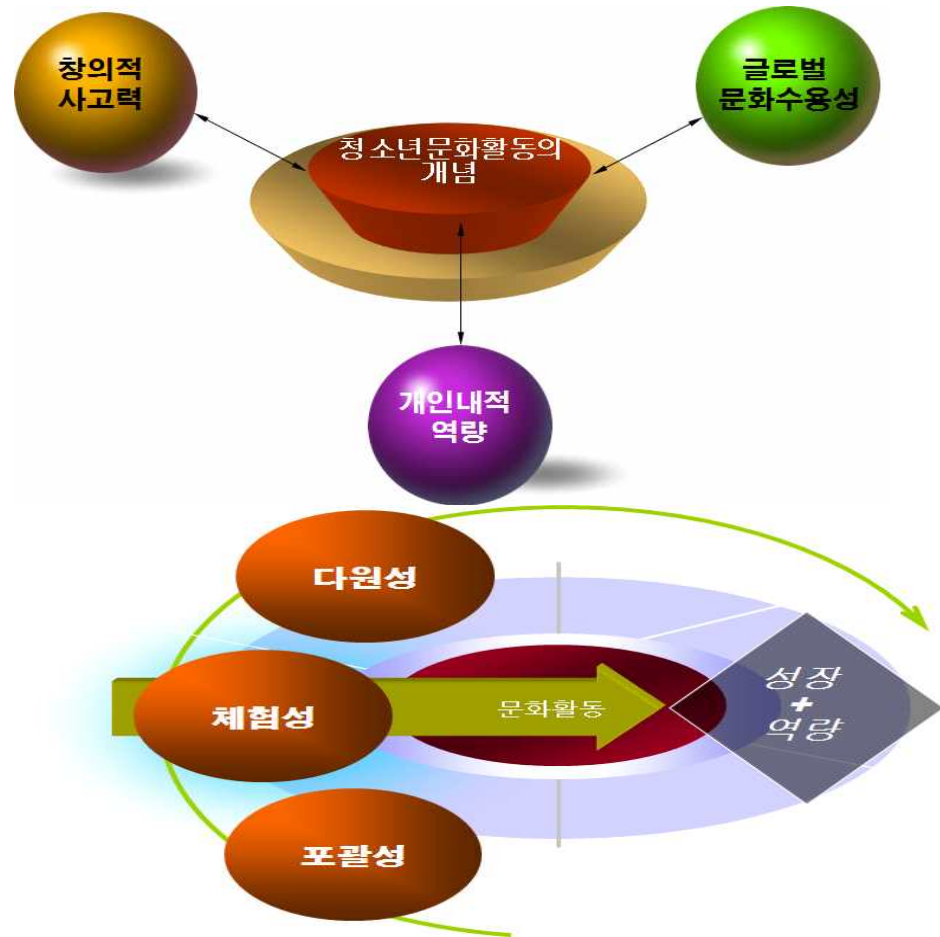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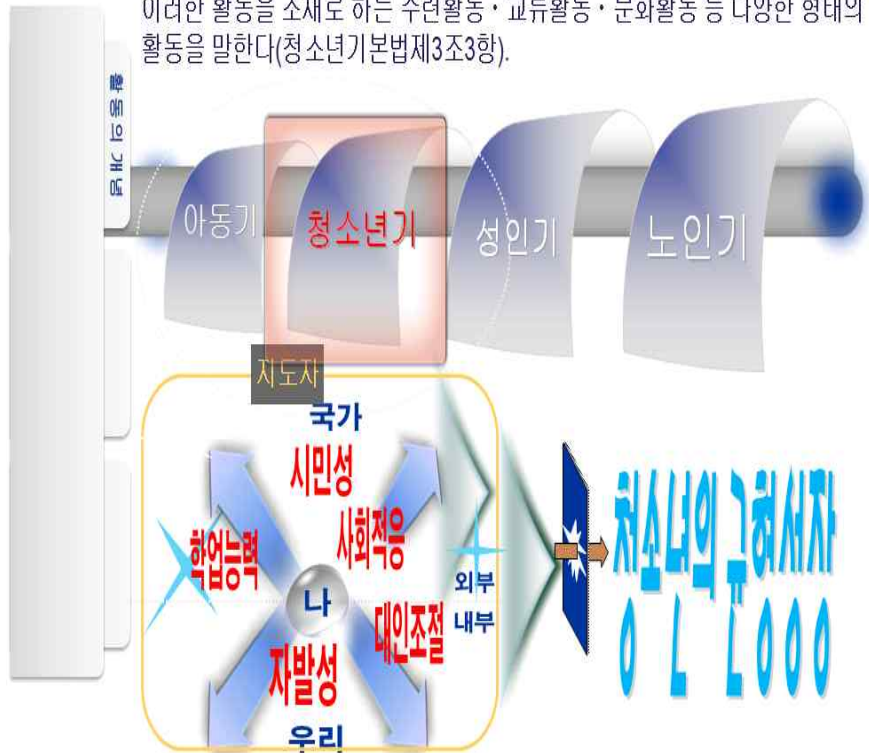
# 1.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개념화 추구

첫째, 아동청소년문화활동의 개념합의를 위한 구성요소가 시급히 필요하다.

- ① 문화활동 대상의 연령범주화
- ② 학교 안 및 학교 밖의 청소년개념에 따른 문화지원방향 제시
- ③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성장목표규정
- ④ 아동과 청소년의 대상별 차이에 따른 문화활동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 차별화 방안 제시
- ⑤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수많은 부서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문화활동 지원주관 부서와 관련부서연계의 점점 명료화 제시

# -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개념화 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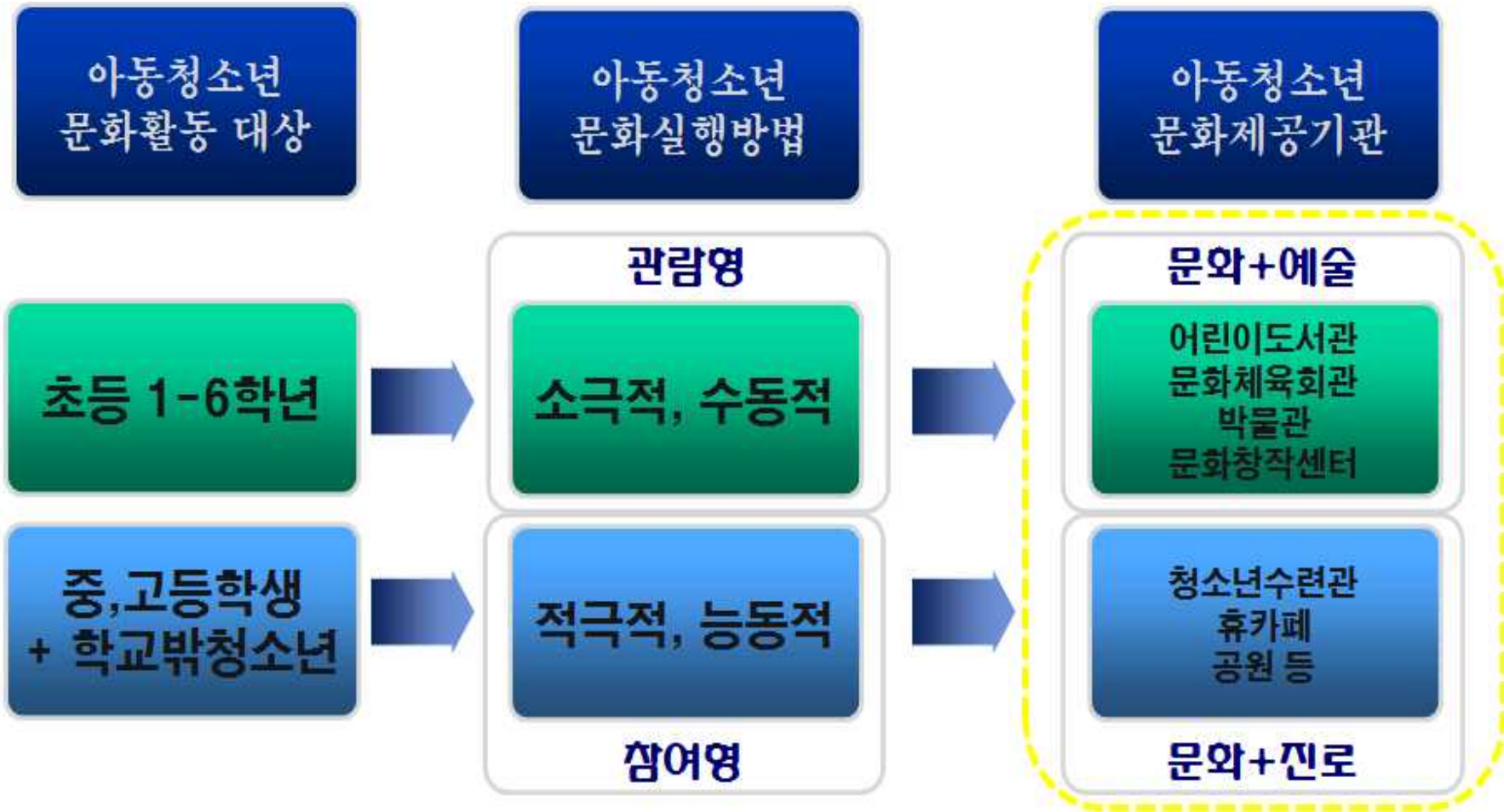
"청소년활동"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·교류활동·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(청소년기본법제3조3항).





문화활동의 효과성을 명시해야 학교교육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?

# -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운영대상의 분리적 접근





# -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정책주체의 강화

서울시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접점 찾기



1 연령

2 대상

3 문화활동 목표

4 접근방식

5 서비스제공핵심기관

6 정책추진주관부서

6-19세의 아동청소년

학교청소년

학교밖청소년



아동

청소년

소극형/  
관람형 중심

적극형/  
자발성 중심

- 박물관/문화회관
- 도서관/아동영화관
- 창작센터 등

- 수련관
- 휴카페
- 체육시설

문화예술과    아동청소년과    학교정책과



## 2. 지원대책의 수립과 수행방안 제시

- ① 서울시의 아동청소년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장기적 계획구현
- ②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센터 설립
- ③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현 시설의 역량 강화
- ④ 아동청소년의 문화체험을 위한 공간과 아지트 발굴
- ⑤ 서울시내 공공시설 및 기관내 아동청소년의 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원
- ⑥ 기업 또는 문화단체 등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제공시설에 대한 지원검토
- ⑦ 아동청소년에게 실제적 문화활동지원이 이루어지는 문화카드제 도입과 운영
- ⑧ 서울시내 권역별 문화활동 전용공간 및 장소 마련
- ⑨ 서울시내 권역별 동아리 및 문화활동 총량제 건물 설치 및 운영
- ⑩ 서울시 아동청소년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활동지원센터 설립
- ⑪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
- ⑫ 아동청소년의 자생적 문화, 동아리활동지원을 위한 전용축제상시화운영
- ⑬ 아동청소년의 문화지원을 위한 문화기금 조성

### 3. 서울시-교육청간 연계 강화

- ① 문화활동의 효과와 가치에 대한 학교내 교육강화
- ② 학교내 문화활동을 제도화하는 방안 구축

#### 아동청소년문화활동이수시간제(예시)

- 1) 대상별 시간수  
초 : 5시간 / 중 : 20시간 / 고 : 10시간
- 2) 문화활동계획서 제출 : 교사확인, 체험활동실시, 평가
- 3) 학생생활기록부 기록
- 4) 향후 인성평가 활용

- ③ 학교내 문화활동추진을 위한 시설 및 여건 강화

## 4. 지원대책의 수립과 수행의 로드맵 제시

추진시기	주요 내용	해당 부서
단기과제 (5년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개념정립과 교육</li> <li>■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울시 문화활동정책수립</li> <li>■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비 확충</li> <li>■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장소 발굴(아지트)</li> <li>■ 아동청소년시설의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(현 아동청소년시설의 지원비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0% 증액)</li> <li>■ 기업, 문화단체의 아동청소년문화활동지원처 발굴</li> <li>■ 아동청소년문화활동안전센터 설립</li> <li>■ 아동청소년의 문화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</li> <li>■ 문화축제 및 동아리축제 활성화</li> <li>■ 학교내 문화활동지원을 위한 시설개선</li> </ul>	<p>아동청소년과</p> <p>아동청소년과</p> <p>아동청소년과</p> <p>아동청소년과</p> <p>아동청소년과</p> <p>아동청소년과</p> <p>아동청소년과</p> <p>아동청소년과/교육지원과</p> <p>아동청소년과</p> <p>교육지원과</p>
중장기 과제 (5년 이후 중장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카드제 도입</li> <li>□ 아동청소년문화활동 시간이수제 도입 (문화시간규정, 학교평가방식 제시, 필요예산지원)</li> <li>□ 아동청소년문화활동 총량제 건물설립</li> <li>□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민센터내 시설 이용시간 확충</li> <li>□ 아동청소년문화활동지원센터 설립</li> <li>□ 서울시 4대 권역별 문화전용공간 구축(문화공간, 전문시설 등)검토</li> <li>□ 아동청소년문화활동지원기금 조성</li> </ul>	<p>아동청소년과/문화예술과</p> <p>아동청소년과/교육지원과</p> <p>아동청소년과</p> <p>아동청소년과</p> <p>주민자치과</p> <p>아동청소년과</p> <p>아동청소년과</p> <p>아동청소년과</p> <p>아동청소년과</p>

## 5. 조례(안)제시

### 서울시 아동청소년문화활동지원을 위한 조례(안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지원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)**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아동청소년"이라 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6세에서부터 19세 미만의 연령에 있는 자를 말한다.
2. 제1호의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상 범주는 "아동"은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, "청소년"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.
3. 제1호의 아동 및 청소년은 초등 및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청소년과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모두 포함한다.
4. "문화활동"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예술활동, 스포츠 활동, 동아리 활동, 봉사활동 및 문화예술진흥법,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문화활동을 말한다.
5. "시설"이란 제4호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또는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제32조의 청소년이용시설, 아동복지법 제52조 제7호의 아동전용시설 및 제8호의 지역아동센터,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문화시설 및 서울시장의 별도로 정한 시설을 말한다.

### **제3조 (아동청소년문화활동 시설의 확보)**

①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문화역량강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고 여가와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문화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을 확보하고 제공해야 한다.

②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이 상시적으로 문화활동을 즐기고 체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.

③ 서울시는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아동청소년이 방과후에 쉽게 이용하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④ 이 조례에 따른 아동청소년문화시설의 종류 및 구체적인 해당 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

**제4조 (아동청소년문화활동 시행계획의 수립)**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.

### **제5조 (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지원센터 설립운영)**

- ①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을 위한 다음 사업의 수행을 위해 문화활동 지원센터(이하 지원센터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1.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
  2.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
  3. 아동청소년문화활동 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
  4. 아동청소년문화활동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
  5. 아동청소년문화활동 지원 단체의 확보 및 지원 관리
  6. 기타 서울시장이 아동청소년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사업
- ② 지원센터는 서울시 관계부서의 장, 공공기관의 대표(서울문화재단, 세종문화회관 등)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.
- ③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6조(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안전센터 설립운영)** ①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활동안전센터를 설립·운영해야 한다. ② 서울시 아동청소년 문화활동안전센터의 기능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7조 (아동청소년문화활동 지원기금조성)** ①서울시는 아동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재원의 조달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. ②서울시는 아동 청소년의 문화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아동청소년문화활동지원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아동청소년문화활동 지원기금심의위원회)**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문화활동지원육성기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문화활동지원기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문화활동기금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9조 (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)**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 제5호에 의한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 (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)**

- ①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긴밀한 협력을 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.
- ②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아동청소년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내에 소재한 초, 중, 고등학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.

**제11조 (민간단체와의 협력)**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**부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감사합니다.

---